

Sep 25, 2019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Articles**
- III. FAQ**
- IV. News**
- V. Events**

Key Contacts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T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는 K-SOX Newsletter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2019 회계연도 상반기, 재무제표 검토의견 변형 2배 증가

분석 결과

- 12월 결산법인 기준 2019 회계연도 반기 검토의견 변형은 총 44건이며, 이는 작년 반기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임
 - ▷ 2018 회계연도 반기 검토의견이 변형된 22개사 중 3개사는 적정의견으로 정정되었으며, 9개사는 현재 상장폐지된 상태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사	
	FY18 (반기)	FY19 (반기)	FY18 (반기)	FY19 (반기)	FY18 (반기)	FY19 (반기)
의견거절(A)	1	6	19	32	20	38
한정(B)	0	0	2	6	2	6
의견 변형 총계(A+B)	1	6	21	38	22	44

- 이러한 비적정 의견을 받은 다수의 상장사들이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 직후 하한가를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남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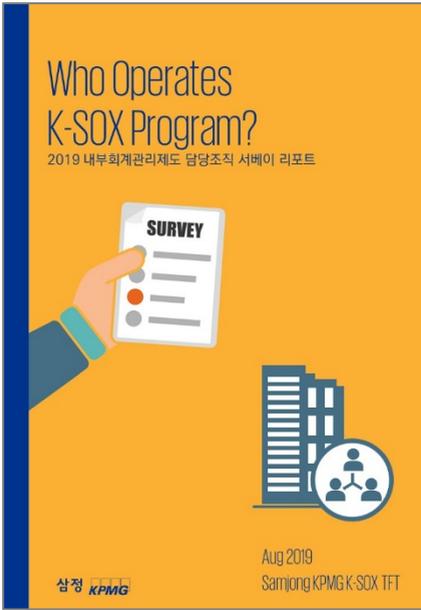
- 반기 검토의견 변형은 다음과 같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됨
 -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7 조)
 - ▷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8 조)
- 전부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2018.11) 이후 엄격한 감사·검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비적정 의견이 증가함
- 향후 경영진,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는 엄격해진 회계감독 환경에 맞추어 철저히 대비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Who Operates K-SOX Program?」

-2019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 발간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첫 시행되는 가운데, 삼정KPMG K-SOX TFT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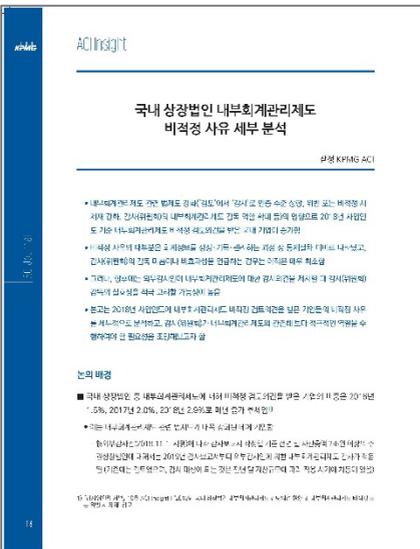
타사의 실무적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의 일관된 양식에 기재된 표면적 정보만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고할만한 설문 결과를 제공한 것은 업계 최초입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K-SOX 운영 및 평가 조직 관련 법규
2. 경영진 평가를 위한 조직
3. 감사(위원회) 평가를 위한 조직
4. K-SOX 평가 아웃소싱

[출처] 삼정 KPMG K-SOX TFT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도 강화의 영향으로 2018 회계연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국내 기업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8 회계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들의 비적정 사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미국의 재무보고 내부통제(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 비적정 사유와 비교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Back to top](#)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온라인 강의를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이수 가능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19.8.27)

Q.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는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 대상 인원들이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등에서 제공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도 교육 시행으로 인정이 되는가?

A.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에 대한 강의 형식(온라인, 오프라인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요건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어떤 형식의 교육을 받든 무방함. 다만, 강의 수강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회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상기와 같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료증(또는 유사

한 문서)을 발행하거나, 회계법인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를 실시한다면 그에 따른 품의문 등을 마련한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위의 예시와 같이,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하지만 않는다면 강의 형식 등은 회사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1) 4대 회계법인(삼정, 삼일, 안진, 한영)이 참여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감사위원 회포럼 사이트](#)에서는 동영상을 통한 유관주제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학습 완료 후 온라인상 수료증이 제공됨(회원가입 무료)

관련 근거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1항 제6호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2항 제7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평가 방식 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42번)

Q.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는가? 감사(위원회)의 평가 시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통제활동을 직접 평가하여야 하는가?

A.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이사회에의 보고와 관련하여, 평가·보고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며(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3), 다음의 업무를 포함하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인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 ▷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당기 조치 계획 및 결과, 평가기간, 평가자, 평가 대상과 방식의 적정성 포함)
- ▷ 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인지하거나 보고 받은 회계처리 이슈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성 평가)
- ▷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확인
-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 확인
-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
-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 ▷ 운영실태보고서상 기타 항목의 적정성 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또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 하는 등의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음(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96)

결국,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처럼 통제활동을 직접 테스트하기보다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에서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경영진이 수행한 절차의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독립적인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Comment: 시기적으로 3,4분기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관련 근거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5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2조 제7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93, 95, 96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국내 동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발등의 불'...기업·회계법인 간 '소통'이 우선" [한국경제]
- 삼정 KPMG, 업계 최초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설문 보고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 비중 매년 증가 추세" [뉴시스]
- "대형 상장사도 내부회계관리자 교육이수 절반 이하" [연합뉴스]
- [2019 회계이슈] <中>내부회계관리제, 中企 도입준비 '미흡' [메트로신문]
- "돈 없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코스닥 내부회계관리 '비상' [이투데이]
- 깐깐해진 회계감사...2018 회계연도 비적정 의견 43 곳 [MTN]
- 지배구조·회계 개혁금소법 제정에 총력투자자보호 강화도 [헤럴드경제]
- 준법지원인 업무 체계적 정리... '매뉴얼' 나왔다 [법률신문]
- 한국동서발전, 내부통제 강화로 경영 투명성 제고 [전기신문]
- 대우조선, 경영 투명성 강화 위해 사내 회계전문가 육성 나서 [매일경제]

해외 동향

- The SEC Threatens to Go Soft on Internal Controls [WSJ]
- Market punishes auditors who flag control issues, study says [CW]

[Back to top](#)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사)감사위원회포럼 조찬포럼

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 07:30~09:50

장 소: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내 용 (변동 가능)

Time	Contents	Speaker
7:10 ~ 7:30	참가자 등록	
7:30 ~ 8:00 [30 분]	조찬	
8:00 ~ 8:20 [20 분]	인사말	금융위원회
8:20 ~ 9:00 [40 분]	세션 1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CSR/CSV)과 감사위원회	김태영 교수 (성균관대학교)
9:00 ~ 9:10 [10 분]	Coffee/Tea Break	
9:10 ~ 9:50 [40 분]	세션 2 감사(위원회)가 해야 할 10 가지 질문	양준권 파트너 (EY 한영)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허세봉 부대표

K-SOX TFT Leader

김민규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김유경 전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용기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도정욱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이성노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전원표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Back to top](#)

[Privacy](#) | [Legal](#)

kpmg.com/socialmedia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